

【( )안은 초판 교재 page입니다.】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600페이지 (596페이지) <597페이지>  (1) 표시항목 (15.3.12 개정)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 <sub>2</sub>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월) (g/시간) (L)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2. 삭제 <2015. 7. 1>				
	3. 김치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나. CO <sub>2</sub>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월) (g/시간) (L)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4. 전기냉방기	가. 냉방효율 나. CO <sub>2</sub> 다. 정격냉방능력 라. 월간에너지비용	(W/W) (g/시간) (W) (원/월)	둘째 정수 정수 정수	
	5. 전기세탁기	<전기세탁기> 가. 1kg당 소비전력량 나. CO <sub>2</sub> 다.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전기드럼세탁기> 가. 1kg당 소비전력량 나. CO <sub>2</sub> 다. 1kg당 1회세탁물사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h/kg) (g/회) (L/kg) (원/년) (Wh/kg) (g/회) (L/kg) (원/년)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정수 첫째 정수	
	6. 삭제 <2015. 7. 1>				
	7. 삭제 <2015. 7. 1>				
	8. 삭제 <2015. 7. 1>				
	9. 전기 냉온수기	가. 비교소비전력량 나. CO <sub>2</sub> 다. 용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kWh/kWh) (g/시간) (L) (원/년)	둘째 정수 첫째 정수	
	10. 전기밥솥	가. 1인분소비전력량 나. CO <sub>2</sub> 다.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Wh/인분) (g/시간) (Wh) (원/년)	첫째 정수 정수 정수	
	11. 전기 진공청소기	가. 청소효율 나. CO <sub>2</sub> 다. 미세먼지방출량 라. 연간에너지비용	(%) (g/시간) (mg/m <sup>3</sup> ) (원/년)	첫째 정수 둘째 정수	
12. 선풍기	가. 풍량효율	((m <sup>3</sup> /min)/W)	첫째		

구 분	적 용 항 목	단 위	소수점자리
13. 공기청정기	가. 1m <sup>2</sup> 당소비전력	(W/m <sup>2</sup> )	첫째
	나. CO <sub>2</sub>	(g/시간)	정수
	다. 표준사용면적	(m <sup>2</sup> )	첫째
	라. 연간에너지비용	(원/년)	정수
14. 백열전구	가. 광효율	(lm/W)	첫째
15. 형광램프	가. 광효율	(lm/W)	첫째
16. 삭제 <2016. 1. 1>			
17. 안정기 내장형램프	가. 광효율	(lm/W)	첫째
18. 삼상 유도전동기	가. 전부하효율	(%)	첫째
	나. CO <sub>2</sub>	(g/시간)	정수
	다. 정격출력/극수	(kW)/(극)	첫째/정수
	라. 연간에너지비용	(원/년)	정수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가. 난방열효율	(%)	첫째
	나. 가스소비량	(kW)	둘째
	다. 난방출력(콘덴싱출력)	(kW)	둘째
20. 어댑터·충 전기	-	-	-
21. 전기 냉난방기	가. 냉난방효율	(W/W)	둘째
	나. CO <sub>2</sub>	(g/시간)	정수
	다.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W)/(W)	정수/정수
	라. 연간에너지비용	(원/년)	정수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가. 월간소비전력량	(kWh/월)	첫째
	나. CO <sub>2</sub>	(g/시간)	정수
	다. 용량	(L)	정수
	라. 연간에너지비용	(원/년)	정수
23. 가스온수기	가. 표시온수열효율	(%)	첫째
	나. 가스소비량	(kW)	첫째
24. 변압기	가. 효율	(%)	둘째
	나. 1차/2차		
	- 2차전압이 고압인 경우	(kV/kV)	첫째/첫째
	- 2차전압이 저압인 경우	(kV/V)	첫째/정수
다. 상수	-	-	
라. 용량	(kVA)	정수	
25. 창 세트	가. 열관류율	(W/(m <sup>2</sup> ·K))	둘째
	나. 기밀성(통기량, 등급)	(m <sup>3</sup> /h·m <sup>2</sup> , 등급)	둘째, 정수
	다. 유리	-	-
26. 텔레비전 수상기	가. 1√m <sup>2</sup> 당소비전력	(W/√m <sup>2</sup> )	첫째
	나. CO <sub>2</sub>	(g/시간)	정수
	다. 소비전력	(W)	첫째
	라. 연간에너지비용	(원/년)	정수
27. 전기온풍기	가. 소비전력	(W)	정수
	나. CO <sub>2</sub>	(g/시간)	정수
	다. 월간에너지비용	(원/월)	정수

600페이지  
(596페이지)  
<597페이지>

(1) 표시항목  
(15.3.12 개정)

페이지	정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600페이지 (596페이지) <597페이지>  (1) 표시항목 (15.3.12 개정)	구분	적용항목	단위	소수점자리	
	28. 전기스토브	가. 소비전력 나. CO <sub>2</sub> 다. 월간에너지비용	(W) (g/시간) (원/월)	정수 정수 정수	
	29. 멀티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가. 냉난방효율 나. CO <sub>2</sub> 다.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라. 한냉지난방용량(-15℃)	(W/W) (g/시간) (W)/(W) (W)	둘째 정수 정수 정수	
	30. 제습기	가. 제습효율 나. CO <sub>2</sub> 다. 정격제습능력 라. 연간에너지비용	(L/kWh) (g/시간) (L) (원/년)	둘째 정수 첫째 정수	
	31. 삭제 <2015. 7. 1>				
	32. 삭제 <2015. 7. 1>				
	33. 삭제 <2015. 7. 1>				
	34. 삭제 <2015. 7. 1>				
	35. 삭제 <2015. 7. 1>				
	36. 전기레인지	가. 단위 소비전력량 나. CO <sub>2</sub> 다. 연간에너지비용	(Wh/kg) (g/시간) (원/년)	정수 정수 정수	
	37. 셋톱박스	가. 능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나.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W) (W)	첫째 첫째	
	(주) 연간에너지비용 또는 월간에너지비용은 백원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ex : 75,000원)로 표시한다.				

# [2015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개정판 1과목] 4차 개정법령 [2015.6.4]

※ 2015.5.29.개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주요기준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10	(3) 기본계획 수립절차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기초자료 수집</td> <td rowspan="2">· 국토교통부 장관</td> <td rowspan="2">자료요청</td> <td>중앙행정기관장</td> </tr> <tr> <td>지방자치단체장</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d>공공기관장</td> </tr> <tr> <td>에너지관련 전문기관장</td> </tr> </table>	기초자료 수집	·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요청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			공공기관장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장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기초자료 수집</td> <td rowspan="2">· 국토교통부 장관</td> <td rowspan="2">자료요청</td> <td>중앙행정기관장</td> </tr> <tr> <td>지방자치단체장</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d>공공기관장</td> </tr> <tr> <td>에너지관련 전문기관장</td> </tr> </table>	기초자료 수집	·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요청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			공공기관장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장
기초자료 수집	·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요청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			공공기관장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장																				
기초자료 수집	·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요청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			공공기관장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장																				
33	(2) 적용대상 건축물	<table border="1"> <tr> <td>· 중앙행정기관의 장</td> <td rowspan="3">관리하는 건축물로써</td> <td rowspan="3">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td> </tr> <tr> <td>· 지방자치단체의 장</td> </tr> <tr> <td>·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td> </tr> </table>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하는 건축물로써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하는 건축물로써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3) 적용행위	대상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수선(창호·단열재·설비 교체에 한함)	대상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34	<b>요점</b>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table border="1"> <tr> <td>1. 목적</td> <td>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td> </tr> <tr> <td>2. 대상</td> <td>공공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함</td> </tr> </table>	1. 목적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2. 대상	공공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함	<table border="1"> <tr> <td>1. 목적</td> <td colspan="2">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td> </tr> <tr> <td rowspan="2">2. 대상</td> <td>관리기관 범위 (소유 또는 관리)</td> <td>적용시설</td> <td>기준</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 기관의 장</li> <li>· 지방자치 단체의 장</li> <li>· 공공기관· 교육 기관의 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 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병원</li> <li>· 중·고등학교· 대학교</li> <li>· 도서관</li> <li>· 수련시설</li> <li>· 업무시설</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3,000㎡ 이상으로서</li> <li>·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li> </ul> </td> </tr> </table>	1. 목적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2. 대상	관리기관 범위 (소유 또는 관리)	적용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 기관의 장</li> <li>· 지방자치 단체의 장</li> <li>· 공공기관· 교육 기관의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 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병원</li> <li>· 중·고등학교· 대학교</li> <li>· 도서관</li> <li>· 수련시설</li> <li>· 업무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3,000㎡ 이상으로서</li> <li>·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li> </ul>						
		1. 목적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2. 대상	공공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함																						
1. 목적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2. 대상	관리기관 범위 (소유 또는 관리)	적용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 기관의 장</li> <li>· 지방자치 단체의 장</li> <li>· 공공기관· 교육 기관의 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 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병원</li> <li>· 중·고등학교· 대학교</li> <li>· 도서관</li> <li>· 수련시설</li> <li>· 업무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3,000㎡ 이상으로서</li> <li>·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li> </ul>																				
35	<table border="1"> <tr> <td>3. 보고</td> <td>· 공공건축물 사용자 또는 관리자 ·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td> </tr> <tr> <td>4. 관리</td> <td>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td> </tr> </table>	3. 보고	· 공공건축물 사용자 또는 관리자 ·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4.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table border="1"> <tr> <td>3. 보고</td> <td>· 공공건축물 사용자 또는 관리자 · 매 분기 <u>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u>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td> </tr> <tr> <td>4. 관리</td> <td>·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u>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u></td> </tr> </table>	3. 보고	· 공공건축물 사용자 또는 관리자 · 매 분기 <u>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u>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4.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u>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3. 보고	· 공공건축물 사용자 또는 관리자 · 매 분기마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4.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3. 보고	· 공공건축물 사용자 또는 관리자 · 매 분기 <u>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u>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4.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u>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36	<p><b>요점</b></p> <p>(1)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p>	<p><b>예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신고(건축법 14조)[참고4]</li> <li>·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공관 포함)</li> <li>· 동·식물원</li> <li>· 공장, 창고시설 등(별표17호내지26호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참고5]</li> <li>·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li> </ul>	<p><b>예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신고(건축법 14조)[참고4]</li> <li>· 단독주택(다가구, 다중, 공관 포함)</li> <li>· 동·식물원</li> <li>· 공장, 창고시설 등(별표17호내지26호시설) 중 <b>냉방 및 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b> 않은 건축물[참고5]</li> <li>·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li> </ul>																																																																		
41	<p><b>요점</b></p> <p>차양 등의 설치</p>	<table border="1"> <tr> <td>1. 대상</td> <td>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리모델링</td> </tr> <tr> <td>2. 적용</td> <td>·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장치, 조명기구 등 설치 · 외벽창 또는 유리외벽 등 부위 :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td> </tr> <tr> <td>3. 기술 기준</td> <td>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td> </tr> </table>	1.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리모델링	2. 적용	·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장치, 조명기구 등 설치 · 외벽창 또는 유리외벽 등 부위 :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	3.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table border="1"> <tr> <td>1. 대상</td> <td><b>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b></td> </tr> <tr> <td>2. 적용</td> <td>·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장치, 조명기구 등 설치 · 외벽창 또는 유리외벽 등 부위 :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td> </tr> <tr> <td>3. 기술 기준</td> <td>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td> </tr> </table>	1. 대상	<b>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b>	2. 적용	·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장치, 조명기구 등 설치 · 외벽창 또는 유리외벽 등 부위 :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	3.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1.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리모델링																																																																				
2. 적용	·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장치, 조명기구 등 설치 · 외벽창 또는 유리외벽 등 부위 :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																																																																				
3.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1. 대상	<b>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b>																																																																				
2. 적용	·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장치, 조명기구 등 설치 · 외벽창 또는 유리외벽 등 부위 :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																																																																				
3.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46	<p>(3) 녹색건축의 인증신청 <b>밑으로 추가</b></p>	<p>(4) 녹색건축의 인증대상 및 건축물대장의 등재 대상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p> <table border="1"> <tr><td>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일 것</td></tr> <tr><td>2. 신축, 재축 또는 별도 증축하는 건축물 일 것</td></tr> <tr><td>3.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일 것</td></tr> <tr><td>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td></tr> </table>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일 것	2. 신축, 재축 또는 별도 증축하는 건축물 일 것	3.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일 것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일 것																																																																					
2. 신축, 재축 또는 별도 증축하는 건축물 일 것																																																																					
3.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일 것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49	<p>(4)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신청 <b>밑으로 추가</b></p>	<p>(5) 건축물대장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재대상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p> <table border="1"> <tr><td>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td></tr> <tr><td>2. 신축, 재축, 또는 별도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td></tr> <tr><td>3. 연면적 3,000㎡ 이상일 것</td></tr> <tr><td>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td></tr> </table>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 재축, 또는 별도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3. 연면적 3,000㎡ 이상일 것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 재축, 또는 별도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3. 연면적 3,000㎡ 이상일 것																																																																					
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50	<p>예제문제 08</p>	<p><b>예제문제 08</b></p> <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시(에너지 평가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3년 2급 출제유형]</p> <p>① <b>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b> ② <b>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b> ③ <b>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b> ④ 도시가스, 전기, 지역냉난방, 유류, 기타의 에너지 소요량</p> <p>해설 에너지평가서 기재내용(시행규칙 서식3, 연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th> <th colspan="3">에너지사용량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td> <td colspan="3"> </td> </tr> <tr> <td colspan="3">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d> <td colspan="3">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sup>2</sup>·년)</td> </tr> <tr> <td>구분</td> <td>에너지소요량</td> <td>1차에너지소요량</td> <td>구분</td> <td>에너지사용량</td> <td>1차에너지사용량</td> </tr> <tr> <td>난방</td> <td></td> <td></td> <td>도시가스(a)</td> <td></td> <td></td> </tr> <tr> <td>급탕</td> <td></td> <td></td> <td>지역·난방(b)</td> <td></td> <td></td> </tr> <tr> <td>냉방</td> <td></td> <td></td> <td>열(a + b)</td> <td></td> <td></td> </tr> <tr> <td>조명</td> <td></td> <td></td> <td>전기(c)</td> <td></td> <td></td> </tr> <tr> <td>환기</td> <td></td> <td></td> <td>합계(a+b+c)</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td> <td>합계(a+b+c)</td> <td></td> <td></td> </tr> <tr> <td colspan="3">온실가스 배출량(kg/m<sup>2</sup>·년)</td> <td colspan="3">온실가스 배출량(kg/m<sup>2</sup>·년)</td> </tr> </tbody> </table> <p>따라서, 도시가스, 전기 등은 에너지소요량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면적당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기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답 : ④</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 <sup>2</sup> ·년)			구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방			도시가스(a)			급탕			지역·난방(b)			냉방			열(a + b)			조명			전기(c)			환기			합계(a+b+c)			합계			합계(a+b+c)			온실가스 배출량(kg/m <sup>2</sup> ·년)			온실가스 배출량(kg/m <sup>2</sup> ·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 <sup>2</sup> ·년)																																																																		
구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방			도시가스(a)																																																																		
급탕			지역·난방(b)																																																																		
냉방			열(a + b)																																																																		
조명			전기(c)																																																																		
환기			합계(a+b+c)																																																																		
합계			합계(a+b+c)																																																																		
온실가스 배출량(kg/m <sup>2</sup> ·년)			온실가스 배출량(kg/m <sup>2</sup> ·년)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55	(1) 에너지평가서 제출	① 다음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 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 라 한다.)를 <b>공개</b> 하여야 한다.																	
	(1) 에너지평가서 제출 <b>표 [2. 삭제]</b>	1. 에너지 평가서 제출 대상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 전체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매매 또는 임대계약시																	
57	<b>[참고]</b> <b>에너지평가서식(시행규칙 서식 3) 교체</b>	<b>■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lt;개정 2015.5.29.&gt;</b> <b>건축물 에너지 평가서</b> <b>[ ] 공동주택 [ ] 업무시설</b>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건축물 현황</td> <td>건축물명</td> <td colspan="2"></td> <td>준공연도</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td> <td></td> <td></td> </tr> <tr> <td>연면적/전용면적</td> <td>m<sup>2</sup> /</td> <td>m<sup>2</sup></td> <td>주 용 도</td> <td></td> </tr> </table>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소					연면적/전용면적	m <sup>2</sup> /	m <sup>2</sup>	주 용 도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소																		
			연면적/전용면적	m <sup>2</sup> /	m <sup>2</sup>	주 용 도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내역</td> <td>인증등급</td> <td colspan="2"></td> <td>인증번호</td> <td></td> </tr> <tr> <td>인증일</td> <td colspan="2"></td> <td>인증기관</td> <td></td> </tr> </tabl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내역	인증등급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기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내역	인증등급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기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정보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b> 			<b>에너지사용량등급</b> 																
<b>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b>			<b>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sup>2</sup>·년)</b>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 방			도시가 스 (a)																		
급 탕			지역 냉·난방 (b)																		
냉 방			열 (a + b)																		
조 명			전 기 (c)																		
합 계			합 계 (a+b+c)																		
온실가스 배출량 (kg/m <sup>2</sup> ·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 <sup>2</sup> ·년)																		
년      월      일																					
<b>국토교통부</b>			운영기관 C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58	<p>(1) 에너지평가서 제출 <b>표 [2. 삭제]</b></p> <p>(3) 에너지평가서의 발급</p> <p>① 에너지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hr/> <p>1.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p> <hr/> <p>2. 에너지관리공단의 장</p> <p>②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 되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세대·호·가구 등을 구분하여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④ 에너지 평가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p> <p>(4) 에너지평가서의 정정</p> <p>①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에너지 평가서의 표시 내용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다른 경우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정정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p>	<p>(3) 에너지평가서의 <b>공개</b></p> <p>①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 되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호·가구 등을 구분하여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p> <p>②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943 607 1469 819"> <tr> <td>1. 주식회사 한국감정원</td> </tr> <tr> <td>2. 에너지관리공단</td> </tr> <tr> <td>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td> </tr> </table>	1.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2. 에너지관리공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2. 에너지관리공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예제문제 13	<p><b>예제문제 13</b></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제출에 관한 기준 중 가장 <b>적당한</b> 것은?</p> <p>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단지 내 전체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중개할 때에는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p> <p>② 에너지 평가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에너지 평가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p> <p>④ 정정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p> <hr/> <p><b>해설</b> ②, ③, ④ 2015.5.29. 삭제된 규정임</p> <p style="text-align: right;">답 : ①</p>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74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li> <li>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li> <li>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창호·단열재·설비교체에 관한 수선)</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li> <li>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li> <li>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b>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b>)</li> </ol>				
	예제문제 08 해설	<b>해설</b>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li> <li>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li> <li>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창호·단열재·설비교체에 관한 수선)</li> </ol>	<b>해설</b>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li> <li>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li> <li>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b>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b>)</li> </ol>				
75	③ 5. 추가신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색건축센터의 장</li> <li>2. 건축사</li> <li>3.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li> <li>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ol> <b>5. 건축물에너지 평가사</b>					
81	(3) 사업계획 보고 <b>밑 추가</b>	(4) 사업계획서 내용 <table border="1"> <tr> <td>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td> </tr> <tr> <td>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td> </tr> <tr> <td>3. 조직 현황</td> </tr> <tr> <td>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td> </tr> </table>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82	요점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정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법 제29조③)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	(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정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법 제29조③) 중 <b>다음의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을</b>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사업</li> <li>②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li> <li>③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li> <li>④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li> </ol>				
		(2)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b>다음과 같은</b>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82	추가	<p>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 이상</p> <table border="1"> <tr> <td>건축분야 중급기술자</td> </tr> <tr> <td>건축물에너지평가사</td> </tr> </table> <p>2. 장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li> <li>• 온도·습도계</li> <li>• 표면온도계</li> </ul> </p> <p>3.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등 전용사무공간을 확보 할 것</li> </ul> </p>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87	<p><b>요점</b> 자격취소 <b>표 교체</b></p>	<table border="1"> <tr> <td>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td> <td rowspan="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 (강행규정)</li> </ul> </td> </tr> <tr> <td>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td> </tr> <tr> <td>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td> </tr> <tr> <td>4.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td> </tr> <tr> <td>5.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1회 위반한 경우  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li> <li>• 자격정지 3년</li> <li>• 자격의 취소</li> </ul> </td> </tr> <tr> <td>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li> <li>• 자격정지 2년</li> <li>• 자격정지 1년</li> </ul> </td> </tr> </tabl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 (강행규정)</li> </ul>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5.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1회 위반한 경우 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li> <li>• 자격정지 3년</li> <li>• 자격의 취소</li> </ul>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li> <li>• 자격정지 2년</li> <li>• 자격정지 1년</li> </ul>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 (강행규정)</li> </ul>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5.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1회 위반한 경우 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li> <li>• 자격정지 3년</li> <li>• 자격의 취소</li> </ul>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의 취소</li> <li>• 자격정지 2년</li> <li>• 자격정지 1년</li> </ul>											

# [2015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개정판 1과목] 3차 개정법령 [2015.3.31]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안은 초판 교재 page입니다.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15 (15)	(6)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지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5 (55)	(1) 에너지 평가서 제출	① 다음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이하 “에너지 평가서” 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01 (101)	2) 고층건축물 등 <b>밑으로 추가</b>	3) 특수구조건축물 1. 내민구조 보, 처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108 (108)	2) 대수선 <b>표 추가</b>	9.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① 고층건축물 ②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제외) 안의 • 2,000㎡ 이상 다중이용업 •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112 (112)	(10) 기타 용어 <b>표 추가</b>	18.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 1.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 2. 벽·천장·바닥 및 반자틀 설치 3.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 설치 전기, 가스, 급수, 배추, 환기시설 설치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시설 설치	
119 (119)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b>다중생활시설(고시원으로서)</b>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35 (135)	2)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 되는 부분 <b>표 추가</b>	7.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경사로 등의 부분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151 (151)	3) 심의사항 <u>표 수정</u>	<p>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p> <p>4.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외부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p> <p>5. 분양 목적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6.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p> <p>7.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참고	<p>1. 다중이용건축물(영 제5조제4항제3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관 련 규 정</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li> <li>16층 이상인 건축물</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건축에 관한 사항</li> <li>구조안전에 관한 규정 :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확인 협조</li> <li>공사감리에 관한 규정 : <b>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b></li> </ul> </td> </tr> </tbody> </table> <p>2. 특수구조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민구조 보·차양 등의 길이가 3배 이상 돌출된 건축물</li> <li>경간 20m 이상 건축물</li> </ul>	구 분	관 련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li> <li>16층 이상인 건축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건축에 관한 사항</li> <li>구조안전에 관한 규정 :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확인 협조</li> <li>공사감리에 관한 규정 : <b>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b></li> </ul>																																																																													
구 분	관 련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m<sup>2</sup> 이상인 건축물</li> <li>16층 이상인 건축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건축에 관한 사항</li> <li>구조안전에 관한 규정 :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확인 협조</li> <li>공사감리에 관한 규정 : <b>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b></li> </ul>																																																																																		
163 (163)	3) 제한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제한하여야 한다.</b>																																																																																
196 (195)	1) 건축물의 유지·관리 <u>표 안의 적용법규정</u>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법</th> <th>내용</th> <th>건축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제40조</td> <td>대지의 안전 등</td> <td>제54조</td> <td>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td> </tr> <tr> <td>제41조</td> <td>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td> <td>제55조</td> <td>건축물의 견폐율</td> </tr> <tr> <td>제42조</td> <td>대지의 조경</td> <td>제56조</td> <td>건축물의 용적률</td> </tr> <tr> <td>제43조</td> <td>공개 공지 등의 확보</td> <td>제57조</td> <td>대지의 분할 제한</td> </tr> <tr> <td>제44조</td> <td>대지와 도로의 관계</td> <td>제58조</td> <td>대지 안의 공지</td> </tr> <tr> <td>제45조</td> <td>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td> <td>제60조</td> <td>건축물의 높이 제한</td> </tr> <tr> <td>제46조</td> <td>건축선의 지정</td> <td>제61조</td> <td>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td> </tr> <tr> <td>제47조</td> <td>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td> <td>제62조</td> <td>건축설비기준 등</td> </tr> <tr> <td>제48조</td> <td>구조내력 등</td> <td>제63조</td> <td>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td> </tr> <tr> <td>제48조의 2</td> <td>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td> <td>제64조</td> <td>승강기</td> </tr> <tr> <td>제49조</td> <td>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td> <td>제65조의 2</td> <td>지능형건축물의 인증<sup>1)</sup></td> </tr> <tr> <td>제50조</td> <td>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td> <td>제67조</td> <td>관계전문기술자</td> </tr> <tr> <td>제50조의 2</td> <td>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td> <td>제68조</td> <td>기술적 기준</td> </tr> <tr> <td>제51조</td> <td>방화지구 안의 건축물</td> <td colspan="2"> <table border="1"> <thead> <tr> <th>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제15조</td> <td>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td> </tr> <tr> <td>제16조</td> <td>녹색건축의 인증</td> </tr> <tr> <td>제17조</td> <td>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 </tr> </tbody> </table> </td> </tr> <tr> <td>제52조</td> <td>건축물의 마감재료</td> <td>제15조</td> <td>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td> </tr> <tr> <td>제52조의 2</td> <td>실내건축</td> <td>제16조</td> <td>녹색건축의 인증</td> </tr> <tr> <td>제53조</td> <td>지하층</td> <td>제17조</td> <td>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 </tr> </tbody> </table> <p>[비고] 특수구조 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제성 등에 관한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p>	건축법	내용	건축법	내용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55조	건축물의 견폐율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48조의 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64조	승강기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	제65조의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sup>1)</sup>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68조	기술적 기준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table border="1"> <thead> <tr> <th>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제15조</td> <td>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td> </tr> <tr> <td>제16조</td> <td>녹색건축의 인증</td> </tr> <tr> <td>제17조</td> <td>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 </tr> </tbody> </tabl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용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제52조의 2	실내건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제53조	지하층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법	내용	건축법	내용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55조	건축물의 견폐율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48조의 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64조	승강기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	제65조의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sup>1)</sup>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68조	기술적 기준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table border="1"> <thead> <tr> <th>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제15조</td> <td>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td> </tr> <tr> <td>제16조</td> <td>녹색건축의 인증</td> </tr> <tr> <td>제17조</td> <td>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 </tr> </tbody> </tabl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용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용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제52조의 2	실내건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제53조	지하층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198 (197)	5)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사항 ① 점검 항목 표 수정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점검 내용(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th> </tr> </thead> <tbody> <tr> <td>1. 대지</td> <td>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td> </tr> <tr> <td>2. 높이 및 형태</td> <td>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td> </tr> <tr> <td>3. 구조안전</td> <td>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td> </tr> <tr> <td>4. 화재안전</td> <td>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 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3조(지하층)</td> </tr> <tr> <td>5. 건축설비</td> <td>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64조(승강기)</td> </tr> <tr> <td>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td> <td>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위한 유지·관리 등 기준고시),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 </tr> </tbody> </table>	항 목	점검 내용(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	1. 대지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 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3조(지하층)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64조(승강기)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위한 유지·관리 등 기준고시),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항 목	점검 내용(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															
1. 대지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 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3조(지하층)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64조(승강기)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위한 유지·관리 등 기준고시),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건축물의 점검결과 보고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199 (198)	7) 내용 추가	7)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이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table border="1"> <tbody> <tr> <td>㉠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td> </tr> <tr> <td>㉡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td> </tr> <tr> <td>㉢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td> </tr> <tr> <td>㉣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td> </tr> <tr> <td>㉤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td> </tr> <tr> <td>㉥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td> </tr> </tbody> </table>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3 (202)	요점 구조 안전의 확인 내용추가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 확인서의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시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body> <tr> <td>1. 연면적</td> <td>1,000㎡ 이상(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td> </tr> <tr> <td>2. 층수</td> <td>3층 이상(조례로 정한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2층 이상)</td> </tr> <tr> <td>3. 건축물 높이</td> <td>13m 이상</td> </tr> <tr> <td>4. 처마높이</td> <td>9m 이상</td> </tr> <tr> <td>5. 경간</td> <td>10m 이상</td> </tr> </tbody> </table> <p>6. 지진구역안의 건축물</p> <p>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박물관, 기념관 등</p> <p>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p> <p>9. 특수한 설계, 시공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p>	1. 연면적	1,000㎡ 이상(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	2. 층수	3층 이상(조례로 정한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2층 이상)	3. 건축물 높이	13m 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경간	10m 이상				
1. 연면적	1,000㎡ 이상(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																
2. 층수	3층 이상(조례로 정한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2층 이상)																
3. 건축물 높이	13m 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경간	10m 이상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204 (203)	(2)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표 수정	(3)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1. 6층 이상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설계자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21 (220)	3) 추가	3) 고층건축물에 대한 기준의 강화 ① 건축물의 구조(법제48조) ②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법제49조) ③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법제50조) ④ 승강기(법제64조)	
231 (230)	2) 용도제한의 강화	1.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2.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도, 소매 시장 다중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인 <b>고시원</b> 의 경우)
256 (255)	요점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제한 3) 추가	3) 층간 바닥구조제한 대상 건축물 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② 공동주택(주택법 사업계획승인대상제외) ③ 다중생활시설(고시원) ④ 오피스텔 ■ 참고 : 주택법 층간 바닥충격음 소음방지기준 1. 경량 충격음 2. 중량 충격음	58데시벨 이하 50데시벨 이하
258 (257)	3) 추가	3)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1. 500세대이상 아파트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소매점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5. 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 다중생활시설(고시원) 8. 오피스텔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332 (330)	(1)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 원회 표	5. 위원자격 안전행정부차관	5. 위원자격 <b>행정자치부차관</b>
	(2) 실무위원회	5. 위원자격 안전행정부	5. 위원자격 <b>행정자치부</b>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360 (358)	<p>■ 효율관리기자재 표시</p>										
	1)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1)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효율관리기자재란~~	1)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b>① 에너지사용기자재란~~</b>								
	1) 표 밑	<b>추가</b>	② 에너지관련기자재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								
361 (359)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b>90일</b>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제문제 02 해설	<b>해설</b> 측정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b>해설</b> 측정결과 통보일로부터 <b>90일</b>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b>제출</b> 하여야 한다.								
363 (361)	2) 사후관리 조사 밑에 추가	<p><b>3) 사후관리 우선조사 제품</b></p> <hr/> <p><b>1. 전년도에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과 부적합률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b></p> <hr/> <p><b>2. 전년도에 다음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li> <li>•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li> <li>•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li> <li>•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li> </ul>									
379 (375)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밑 참고 추가	<p><b>참고</b> 인증제품에서의 퇴출사유</p>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body> <tr> <td>1. 기술수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li> </ul> </td> </tr> <tr> <td>2. 보급정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전체 판매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li> </ul> </td> </tr> <tr> <td>3. 인증실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연간 10건 이하인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의 최근 3년간 생산·판매한 실적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현저히 저조할 것</li> </ul> </td> </tr> <tr> <td>4. 기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li> </ul> </td> </tr> </tbody> </table>		1. 기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li> </ul>	2. 보급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전체 판매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li> </ul>	3. 인증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연간 10건 이하인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의 최근 3년간 생산·판매한 실적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현저히 저조할 것</li> </ul>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li> </ul>
1. 기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li> </ul>										
2. 보급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전체 판매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li> </ul>										
3. 인증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연간 10건 이하인 경우일 것</li> <li>• 해당 기자재의 최근 3년간 생산·판매한 실적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현저히 저조할 것</li> </ul>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계속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li> </ul>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385 (381)	(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 (시행령 별 표2 참고)  <b>표 수정</b>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장비</td> <td colspan="2">1. 적외선 온도계 2. 데이터 기록계 3. 온도·습도계</td> <td>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td> </tr> <tr> <td rowspan="2">자산</td> <td>법인</td> <td>자본금</td> <td>2억원 이상</td> </tr> <tr> <td>개인</td> <td>자산평가액</td> <td>4억원 이상</td> </tr> <tr> <td>기술인력</td> <td colspan="2">「국가기술택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td> <td>3명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2. 데이터 기록계 3. 온도·습도계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택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2. 데이터 기록계 3. 온도·습도계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국가기술택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386 (382)	■비고  <b>전체수정</b>	<b>■비고</b>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88 (384)	예제문제 14	<b>예제문제 14</b>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에 관한 기준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법인등록시 출자금은 4억원 이상이다. ③ 전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3명 이상의 전기기사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한 사람이 2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b>해설</b> 1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본금 또는 출자금 · 개인 자본금 : 4억 이상 · 법인 출자금 : 2억 이상  <b>답 : ②</b>																																									
596 (597)	(1) 표시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효율관리 기자재</th> <th colspan="3">표시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 전기냉장고</td> <td>·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2. 전기냉동고</td> <td>·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냉동실유효내용적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3. 김치냉장고</td> <td>·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4. 전기냉방기</td> <td>· 냉방효율 · 월간에너지비용</td> <td>· 정격냉방능력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5. 전기세탁기</td> <td>· 1kg당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1kg당 1회 세탁물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회 세탁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6. 전기 드럼세탁기</td> <td>· 1kg당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1kg당 1회 세탁물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회 세탁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7. 식기세척기</td> <td>· 세척효율 · 연간에너지비용</td> <td>· 1인당 1회 세척물 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회 세척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8. 식기건조기</td> <td>· 20분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건조성능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9. 전기냉온수기</td> <td>· 비교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body> </table>	효율관리 기자재	표시항목			1. 전기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2. 전기냉동고	·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냉동실유효내용적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3. 김치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4. 전기냉방기	· 냉방효율 · 월간에너지비용	· 정격냉방능력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5. 전기세탁기	· 1kg당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1kg당 1회 세탁물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회 세탁시 CO <sub>2</sub> 배출량	6. 전기 드럼세탁기	· 1kg당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1kg당 1회 세탁물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회 세탁시 CO <sub>2</sub> 배출량	7. 식기세척기	· 세척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1인당 1회 세척물 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회 세척시 CO <sub>2</sub> 배출량	8. 식기건조기	· 20분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건조성능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9. 전기냉온수기	· 비교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효율관리 기자재	표시항목																																										
1. 전기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2. 전기냉동고	·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냉동실유효내용적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3. 김치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4. 전기냉방기	· 냉방효율 · 월간에너지비용	· 정격냉방능력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5. 전기세탁기	· 1kg당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1kg당 1회 세탁물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회 세탁시 CO <sub>2</sub> 배출량																																								
6. 전기 드럼세탁기	· 1kg당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1kg당 1회 세탁물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회 세탁시 CO <sub>2</sub> 배출량																																								
7. 식기세척기	· 세척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1인당 1회 세척물 사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회 세척시 CO <sub>2</sub> 배출량																																								
8. 식기건조기	· 20분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건조성능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9. 전기냉온수기	· 비교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596 (597)	(1) 표시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효율관리 기자재</th> <th colspan="3">표시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0. 전기밥솥</td> <td>· 1인분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1회 취사보온소비전력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11. 전기 진공청소기</td> <td>· 청소효율 · 연간에너지비용</td> <td>· 미세먼지방출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12. 선풍기</td> <td>· 풍량효율 · 연간에너지비용</td> <td>· 표준풍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13. 공기청정기</td> <td>· 1m<sup>3</sup> 당 소비전력 · 연간에너지비용</td> <td>· 표준사용면적 · 소비효율등급</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14. 백열전구</td> <td>·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전구소비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15. 형광램프</td> <td>·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램프소비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16. 형광램프용 안정기</td> <td>· 비교효율</td> <td><del>·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del></td> <td></td> </tr> <tr> <td>17. 안정기내장형 램프</td> <td>·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입력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18. 삼상 유도전동기</td> <td>· 전부하효율 · 연간에너지비용</td> <td>· 정격출력/극수</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19. 가정용 가스보일러</td> <td>· 난방열효율</td> <td>· 가스소비량</td> <td>· 난방출력(콘덴싱출력)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r> <tr> <td>20. 어댑터·충전기</td> <td><del>·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del></td> <td></td> <td></td> </tr> <tr> <td>21. 전기냉난방기</td> <td>· 냉난방효율 · 연간에너지비용</td> <td>·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22. 상업용 전기냉장고</td> <td>·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td> <td>·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23. 가스온수기</td> <td>· 표시온수열효율</td> <td>· 가스소비량</td> <td><del>· 소비효율등급</del></td> </tr> <tr> <td>24. 변압기</td> <td>· 효율(50% 부하율 기준)</td> <td>· 1차 전압 / 2차 전압·상수·용량</td> <td></td> </tr> <tr> <td>25. 창 세트</td> <td>· 열관류율 · 유리</td> <td>· 기밀성(통기량, 등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del>· 프레임 재질</del></td> </tr> <tr> <td>26. 텔레비전 수상기</td> <td>· 1√m<sup>2</sup> 당 소비전력 · 연간에너지비용</td> <td><del>· 동작모드소비전력</del>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27. 전기온풍기</td> <td>· 소비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d>· 월간에너지비용</td> </tr> <tr> <td>28. 전기스토브</td> <td>· 소비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d>· 월간에너지비용</td> </tr> <tr> <td>29. 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td> <td>· 냉난방효율 ·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d>·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td> <td>· 한냉난방용량(-15℃)</td> </tr> <tr> <td>30. 제습기</td> <td>· 제습효율 · 연간에너지비용</td> <td>· 정격제습능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r> <tr> <td>31. 전기장판</td> <td>· 소비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d>· 월간에너지비용</td> </tr> <tr> <td>32. 전기온수매트</td> <td>· 소비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d>· 월간에너지비용</td> </tr> <tr> <td>33. 전열보드</td> <td>· 10m<sup>2</sup> 당 소비전력</td> <td>· 10m<sup>2</sup> 당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d>· 10m<sup>2</sup> 당 월간에너지비용</td> </tr> <tr> <td>34. 전기침대</td> <td>· 소비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d>· 월간에너지비용</td> </tr> <tr> <td>35. 전기 라디에이터</td> <td>· 소비전력</td> <td>· 1시간 사용시 CO<sub>2</sub> 배출량</td> <td>· 월간에너지비용</td> </tr> </tbody> </table>	효율관리 기자재	표시항목			10. 전기밥솥	· 1인분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1회 취사보온소비전력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1. 전기 진공청소기	· 청소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미세먼지방출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2. 선풍기	· 풍량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표준풍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3. 공기청정기	· 1m <sup>3</sup> 당 소비전력 · 연간에너지비용	· 표준사용면적 · 소비효율등급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4. 백열전구	·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	· 전구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5. 형광램프	·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	· 램프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6. 형광램프용 안정기	· 비교효율	<del>·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del>		17. 안정기내장형 램프	·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	· 입력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8. 삼상 유도전동기	· 전부하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정격출력/극수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 난방열효율	· 가스소비량	· 난방출력(콘덴싱출력) <del>· 소비효율등급</del>	20. 어댑터·충전기	<del>·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del>			21. 전기냉난방기	· 냉난방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23. 가스온수기	· 표시온수열효율	· 가스소비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24. 변압기	· 효율(50% 부하율 기준)	· 1차 전압 / 2차 전압·상수·용량		25. 창 세트	· 열관류율 · 유리	· 기밀성(통기량, 등급) <del>· 소비효율등급</del>	<del>· 프레임 재질</del>	26. 텔레비전 수상기	· 1√m <sup>2</sup> 당 소비전력 · 연간에너지비용	<del>· 동작모드소비전력</del>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27. 전기온풍기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28. 전기스토브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29. 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	· 냉난방효율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한냉난방용량(-15℃)	30. 제습기	· 제습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정격제습능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31. 전기장판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32. 전기온수매트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33. 전열보드	· 10m <sup>2</sup> 당 소비전력	· 10m <sup>2</sup> 당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10m <sup>2</sup> 당 월간에너지비용	34. 전기침대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35. 전기 라디에이터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효율관리 기자재	표시항목																																																																																																												
		10. 전기밥솥	· 1인분 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1회 취사보온소비전력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1. 전기 진공청소기	· 청소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미세먼지방출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2. 선풍기	· 풍량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표준풍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3. 공기청정기	· 1m <sup>3</sup> 당 소비전력 · 연간에너지비용	· 표준사용면적 · 소비효율등급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4. 백열전구	·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	· 전구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5. 형광램프	·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	· 램프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6. 형광램프용 안정기	· 비교효율	<del>·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del>																																																																																																											
		17. 안정기내장형 램프	· 광효율 <del>· 소비효율등급</del>	· 입력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8. 삼상 유도전동기	· 전부하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정격출력/극수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19. 가정용 가스보일러	· 난방열효율	· 가스소비량	· 난방출력(콘덴싱출력) <del>· 소비효율등급</del>																																																																																																										
		20. 어댑터·충전기	<del>·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del>																																																																																																												
		21. 전기냉난방기	· 냉난방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정격냉방능력/정격난방능력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22. 상업용 전기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 연간에너지비용	· 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23. 가스온수기	· 표시온수열효율	· 가스소비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24. 변압기	· 효율(50% 부하율 기준)	· 1차 전압 / 2차 전압·상수·용량																																																																																																											
		25. 창 세트	· 열관류율 · 유리	· 기밀성(통기량, 등급) <del>· 소비효율등급</del>	<del>· 프레임 재질</del>																																																																																																										
		26. 텔레비전 수상기	· 1√m <sup>2</sup> 당 소비전력 · 연간에너지비용	<del>· 동작모드소비전력</del> <del>· 소비효율등급</del>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27. 전기온풍기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28. 전기스토브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29. 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	· 냉난방효율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정격냉방용량/정격난방용량 <del>· 소비효율등급</del>	· 한냉난방용량(-15℃)																																																																																																										
		30. 제습기	· 제습효율 · 연간에너지비용	· 정격제습능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31. 전기장판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32. 전기온수매트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33. 전열보드	· 10m <sup>2</sup> 당 소비전력	· 10m <sup>2</sup> 당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10m <sup>2</sup> 당 월간에너지비용																																																																																																										
		34. 전기침대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35. 전기 라디에이터	· 소비전력	· 1시간 사용시 CO <sub>2</sub> 배출량	· 월간에너지비용																																																																																																										
		654 (648)	문제 14	① 1층 바닥면으로부터 1m 이하는 <b>건축면적</b> 에 산입되지 않는다.																																																																																																											
			문제 17	① 대지란 원칙적으로 측량, 수조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① 대지란 원칙적으로 <b>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b>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2015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개정판 1과목] 2차 개정법령 [2014.11.18]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안은 초판 교재 page입니다.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63) 63	예제문제 01	④ 녹색교육기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녹색교육기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0) 160	요점 건축 신고	<p style="text-align: center;"><b>비고</b></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지구단위구역에서의 건축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연면적 200m<sup>2</sup>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b>비고</b></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u>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u> 등에서의 건축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연면적 200m<sup>2</sup>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p>							
(178) 179	3) 건축물 대장 기재 통지	<p>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승인</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건축물대장에 기재</p>	<p>① <b>특별자치시장</b>,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승인</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건축물대장에 기재</p>							
(182) 183	요점 설계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사 설계 대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li> <li>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li> <li>3.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li> <li>4. 허가대상 가설건축물</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사 설계 대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li> <li>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li> <li>3. <u>「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u></li> <li>4. 허가대상 가설건축물</li> </ol>							
(183) 184	예제문제 18 해설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사 설계 대상</b></p> <p>다음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li> <li>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li> <li>3.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li> <li>4. 허가대상 가설건축물</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사 설계 대상</b></p> <p>다음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li> <li>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li> <li>3. <u>「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u></li> <li>4. 허가대상 가설건축물</li> </ol>							
(189) 190	예제문제 19 [문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 <sup>2</sup> 이고, 6층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상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 <sup>2</sup> 이고, 6층인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상 <b>건설기술용역업자</b>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예제문제 19 [해설]	<p>㉠ 공사감리권한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일반건축물</td> <td>건축사</td> </tr> <tr> <td>다중이용건축물</td> <td>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td> </tr> </table>	일반건축물	건축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p>㉠ 공사감리권한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일반건축물</td> <td>건축사</td> </tr> <tr> <td>다중이용건축물</td> <td><b>건설기술용역업자</b></td> </tr> </table>	일반건축물	건축사	다중이용건축물
일반건축물	건축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일반건축물	건축사									
다중이용건축물	<b>건설기술용역업자</b>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242) 243	요점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의 용도</b></p> <p>④ 건축물의 2층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주택· 다가구주택</li> <li>· 공동주택</li>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li> <li>· 의료시설</li> <li>·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li> <li>· 오피스텔</li> <li>· 숙박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의 용도</b></p> <p>④ 건축물의 2층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주택· 다가구주택</li> <li>· 공동주택</li>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b>다중생활시설(고시원)</b></li> <li>· 의료시설</li> <li>·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li> <li>· 오피스텔</li> <li>· 숙박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252) 253	2) 배연설비 설치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의 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li> <li>·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li> <li>·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li> <li>· 고시원(2종 근린생활시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의 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li> <li>·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li> <li>·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li> <li>· 다중생활시설(<b>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b>)</li> </ul>
(273) 274	3) 구조제한	<p>1. 승강장</p> <p>① ~~</p> <p>② 승강장의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p> <p>③ ~~</p> <p>④ ~~</p> <p>⑤ ~~</p> <p>⑥ ~~</p> <p>⑦ ~~</p>	<p>1. 승강장</p> <p>① ~~</p> <p>② 승강장<b>은</b>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p> <p>③ ~~</p> <p>④ ~~</p> <p>⑤ ~~</p> <p>⑥ ~~</p> <p>⑦ ~~</p>
(274) 275	요점 개별난 방설	<p style="text-align: center;"><b>구 분</b></p> <p>1. 보일러의 위치</p>	<p style="text-align: center;"><b>구 분</b></p> <p>1. 보일러<b>실</b>의 위치</p>
(290) 291	(1) 배연설비 설치 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b>대상</b></p> <p>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장례식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대상</b></p> <p>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b>다중생활시설(고시원)</b>, 장례식장</li> </ul>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300) 301	(1)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 범위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조항</th> <th>내 용</th> <th>법조항</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법제40조</td> <td>대지의 안전 등</td> <td>법제50조의2</td> <td>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td> </tr> <tr> <td>법제41조</td> <td>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td> <td>법제51조</td> <td>방화지구 안의 건축물</td> </tr> <tr> <td>법제48조</td> <td>구조내력 등</td> <td>법제52조</td> <td>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td> </tr> <tr> <td>법제49조</td> <td>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td> <td>법제62조</td> <td>건축설비기준 등</td> </tr> <tr> <td>법제50조</td> <td>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td> <td>법제64조</td> <td>승강기</td> </tr> <tr> <td colspan="2">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td> <td colspan="2">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td> </tr> </tbody> </table>	법조항	내 용	법조항	내 용	법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법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법제41조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법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법제48조	구조내력 등	법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법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법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법제64조	승강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법조항	내 용	법조항	내 용																												
법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법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법제41조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법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법제48조	구조내력 등	법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법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법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법제64조	승강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303) 304	요점 기술적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내 용</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법 제40조 · 법 제41조 · 법 제48조 내지 제52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 법 제66조</td> <td>· 법 제40조 · 법 제41조 · 법 제48조 내지 제52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 <b>법 제52조의 2</b></td> </tr> <tr> <td>·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td> <td>·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td> </tr> </tbody> </table>	내 용	내 용	· 법 제40조 · 법 제41조 · 법 제48조 내지 제52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 법 제66조	· 법 제40조 · 법 제41조 · 법 제48조 내지 제52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 <b>법 제52조의 2</b>	·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	·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																							
내 용	내 용																														
· 법 제40조 · 법 제41조 · 법 제48조 내지 제52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 법 제66조	· 법 제40조 · 법 제41조 · 법 제48조 내지 제52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 <b>법 제52조의 2</b>																														
·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	·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																														
(366) 370	1) 대기전력경 고표지대상 제품	<p>■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22종 운용</p> <p>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p> <p>① 종류 : 22종 중 18개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절전제어장치</li> <li>· 손건조기</li> <li>· 서버</li> <li>· 디지털컨버터</li> </ul> <p style="text-align: right;">} 불포함</p> <p>② 기준미달제품처리 : 경고표지부착(손실규정)</p> <p>2.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p> <p>① 종류 : 22종 전부 해당</p> <p>② 기준충족 제품처리 : (산)이 국가 등에게 우선구매 등 요청(이익규정)</p>	<p>■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21종 운용</p> <p>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p> <p>① 종류 : 21종 중 16개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절전제어장치</li> <li>· 손건조기</li> <li>· 서버</li> <li>· 디지털컨버터</li> </ul> <p style="text-align: right;">} 불포함</p> <p>② 기준미달제품처리 : 경고표지부착(손실규정)</p> <p>2.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p> <p>① 종류 : 21종 전부 해당</p> <p>② 기준충족 제품처리 : (산)이 국가 등에게 우선구매 등 요청(이익규정)</p>																												
(376) 380	예제문제 10	③ 주거용 보일러	③ <b>선박용</b> 보일러																												
(377) 382	(1)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p style="text-align: center;"><b>조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취소</li> <li>· 지정취소</li> <li>· 6월 이내의 시험업무정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조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취소</li> <li>· 지정취소</li> <li>· <b>6개월</b> 이내의 시험업무정지</li> </ul>																												
	(2) 자체측정 승인취소	<p style="text-align: center;"><b>조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취소</li> <li>· 승인취소</li> <li>· 6월 이내의 자체승인업무정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조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취소</li> <li>· 승인취소</li> <li>· <b>6개월</b> 이내의 자체승인업무정지</li> </ul>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383) 387	3) 등록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율관리기자재 재인증 제한기간 : 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고효율에너지</u>기자재 재인증 제한기간 : 1년</li> </ul>
(384) 388	예제문제 15 [해설]	1. 성과배분계약 모든 투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성과 (절감액)를 에너지사용자가 배분해 나누어가지는 형태	1. 성과배분계약 모든 투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성과 (절감액)를 <u>에너지사용자와</u> 배분해 나누어가지는 형태
(386) 390	(2) 자발적 협약 대상	<hr/> 1. 에너지절약형 시설 <hr/> 2.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hr/>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hr/>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hr/>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hr/>	<hr/> 1. 에너지절약형 시설 <hr/> 2.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hr/>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hr/>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hr/> 5. <u>제2호</u> 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hr/>
(387) 391	예제문제 17	②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력	②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403) 407	예제문제 29 [해설]	④항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사유이다. 답 : ④	①항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답 : ①
(408) 412	예제문제 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다른 폐열이용에 관한 기준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u>다른</u> 폐열이용에 관한 기준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530) 536	예제문제 09	④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총용량이란 에너지 사용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과정들의 손실을 제외한 사용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	④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u>소요량</u> 이란 에너지 사용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과정들의 손실을 제외한 사용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
(536) 542	(2) 용어의 정의	<hr/>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hr/>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hr/>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hr/>	<hr/>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hr/> 2. 건설기술 <u>진흥</u> 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hr/>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hr/>
(537) 543	⑥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hr/>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hr/>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 <hr/>	<hr/>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hr/> 2. 건설기술 <u>진흥</u> 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 <hr/>
(571) 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사실제 대상(건축법 제23조)</li> </ul>	<hr/> 1. 건축허가 <hr/> 2. 건축신고 <hr/> 3.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리모델링 <hr/> 4. 바닥면적 합계 500m <sup>2</sup> 이상인 허가대상 용도변경 <hr/>	<hr/> 1. 건축허가 <hr/> 2. 건축신고 <hr/> 3. <u>주택법에 따른</u> 건축물의 리모델링 <hr/> 4. 바닥면적 합계 500m <sup>2</sup> 이상인 허가대상 용도변경 <hr/>

페이지		교정 전	교정 후
(577) 583	예제문제 35	③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리모델링	③ <b>주택법에 따른</b> 건축물의 리모델링
		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리모델링	2. <b>주택법에 따른</b> 건축물의 리모델링
(592) 598	26. 텔레비전 수상기	· $1\sqrt{m^2}$ 당 소비전력	· <b>1시간당</b> 소비전력
(594) 600	2) 사후관리 검사 재실시 등	② 공단이사장은 제①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b>청문절차에</b>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99) 605	참고 표	<44. 가스진공온수보일러까지 이하 생략>	< <b>4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까지</b> 이하 생략>
(604) 610	예제문제 5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②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b>고효율인증업자</b> 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②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제문제 52	<b>해설</b> 인증유효기간 : 3년(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효율 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b>해설</b> 인증유효기간 : <b>인증서 발급일로부터</b> 3년(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효율 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650) 656	문제 2번	②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b>오피스텔</b> 이외의 건축물로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014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개정판 1과목] 1차 개정법령 [2014.11.3]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1차 정오표는 2014년 8월 1일 이전에 구입하신 독자분께서만 정오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법령은 수시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차 개정 관련법

페이지		교정 후
14	예제문제 04	<p><b>예제문제 04</b></p> <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부적당한 것은? <span style="float: right;">【13년 1급 출제유형】</span></p> <p>①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녹색 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 목표에 관한 사항                  ③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전문 인력의 조달 사항                  ④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계획</p> <hr/> <p><b>해설</b>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해당된다.  <span style="float: right;">답 : ③</span></p>
23	(3)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공개  오른쪽 박스 추가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용도·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정보체계공개방식(법 제10조⑥)</p> <p>1.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국)이 지정한 기관·단체의 홈페이지</p> </div>
31	(2)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기준	<p>①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따른다.</p>
32	예제문제 06	<p><b>예제문제 06</b></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만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b>건축물을 신축하려고</b>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시한 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에 따른다.</p> <hr/> <p><b>해설</b>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span style="float: right;">답 : ①</span></p>

페이지		교정 후
58	예제문제 13	<p><b>예제문제 13</b></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제출에 관한 기준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p> <p>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단지 내 전체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중개할 때에는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b>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b></p> <p>② 에너지 평가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에너지 평가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p> <p>④ 정정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p> <hr/> <p><b>해설</b> 정정신청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답 : ④</p>
83	예제문제 03	<p><b>예제문제 03</b></p> <p>「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사유에 가장 부적합한 것은?</p> <p>①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b>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p> <p>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p> <p>④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p> <hr/> <p><b>해설</b>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답 : ①</p>
85	오른쪽 박스 추가	<p>■ <b>피성년후견인(민법 제10조)</b></p> <p><b>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b></p>
87	비고	<p>■ <b>비고</b></p> <p>1. <b>상기 1, 2, 3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규정)</b></p> <p>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페이지		교정 후																	
87	오른쪽 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평가사 <b>결격사유</b></li>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ul>																	
98~99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8	왼쪽 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수선의 인정여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사범위</th> <th>판정</th> </tr> </thead> <tbody> <tr> <td>내력벽 30㎡ 이상 수선변경</td> <td>대수선</td> </tr> <tr> <td>방화벽수선 (규모와 관계없이)</td> <td>대수선</td> </tr> <tr> <td><b>방화</b>구획벽 수선 (규모와 관계없이)</td> <td>대수선</td> </tr> <tr> <td>비내력벽수선 (규모와 관계없이)</td> <td>대수선 아님</td> </tr> <tr> <td>기둥 3개 수선변경</td> <td>대수선</td> </tr> <tr> <td>기둥1+보2개 수선변경</td> <td>대수선 아님</td> </tr> <tr> <td>기둥1+보1+지붕틀1+수선</td> <td>개축</td> </tr> </tbody> </table>		공사범위	판정	내력벽 30㎡ 이상 수선변경	대수선	방화벽수선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b>방화</b> 구획벽 수선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비내력벽수선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아님	기둥 3개 수선변경	대수선	기둥1+보2개 수선변경	대수선 아님	기둥1+보1+지붕틀1+수선	개축
공사범위	판정																		
내력벽 30㎡ 이상 수선변경	대수선																		
방화벽수선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b>방화</b> 구획벽 수선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비내력벽수선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아님																		
기둥 3개 수선변경	대수선																		
기둥1+보2개 수선변경	대수선 아님																		
기둥1+보1+지붕틀1+수선	개축																		
119	(5) 문화 및 집회시설	<p>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p> <p>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p> <p>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p> <p>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p> <p>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p>	<p>바닥면적의 합계가 <b>500㎡</b> 이상인 것</p> <p>바닥면적의 합계가 <b>500㎡</b> 이상인 것</p> <p>체육관 및 운동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p> <p>-</p> <p>-</p>																

페이지		교정 후											
119	(6) 종교시설	<p>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p>	<p>바닥면적의 합계가 <b>500m<sup>2</sup></b> 이상인 것</p> <p>-</p>										
125	예제문제 19	<p><b>예제문제 19</b></p> <p>다음 중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결합이 가장 부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p> <p>① 판매시설 : 도매시장, 1,500m<sup>2</sup>인 게임제공업소          ② 위락시설 : 주점영업, 무도장          ③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봉안당, 장의사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물병원, 독서실</p> <p>.....</p> <p><b>해설</b> 장의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 style="text-align: right;"><b>답 : ③</b></p>											
132	예제문제 22	답 : ①	답 : ③										
143		$h = \frac{\text{방의 부피}}{\text{바닥면적}} = \frac{V_1 + V_2}{l_1 \times l_2}$											
152	예제문제 40	<p><b>예제문제 40</b></p> <p>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p> <p>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m<sup>2</sup>인 건축물          ② 판매시설 중 백화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500m<sup>2</sup>인 건축물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용도로 쓰이는 17층인 건축물          ④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0m<sup>2</sup>인 건축물</p> <p>.....</p> <p><b>해설</b>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층 이상</li> <li>· 용도바닥면적 합계 5,000m<sup>2</sup> 이상인 <b>문화 및 집회시설</b>(전시장, 동·식물원 제외)</li> </ul> <p style="text-align: right;"><b>답 : ①</b></p>											
154	<b>요점 사전결정</b>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시기</th> <th>내용</th> <th>통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허가 대상 건축물</td> <td>건축허가 신청전</td> <td>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td> <td>사전 결정<b>일</b>로부터 7일 이내</td> <td>사전결정신청자는 · 건축위원회심의와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td> </tr> </tbody> </table> <p>· 신청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p> <p>·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됨</p>		대상	시기	내용	통지	비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	사전 결정 <b>일</b> 로부터 7일 이내	사전결정신청자는 · 건축위원회심의와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대상	시기	내용	통지	비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	사전 결정 <b>일</b> 로부터 7일 이내	사전결정신청자는 · 건축위원회심의와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페이지		교정 후
156	1)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5)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p><b>▶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b></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u>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t;신설 2014.5.28.&gt;</u></p> <p>④ <u>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t;개정 2014.5.28.&gt;</u></p> <p>⑤ <u>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 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gt;</u></p> <p>⑥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gt;</u></p>
165	2 가설 건축물	<p><b>▶ 제20조 【가설건축물】</b></p> <p>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1.4.14, 2014.1.14.&gt;</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1.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li> <li>2. 4층 이상인 경우</li> <li>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li> </ol>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4.&gt;</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4.1.14.&gt;</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1.14.&gt;</p> <p>[시행일 : 2014.10.15]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0조제5항</p>

165 2 가설 건축물

- 영 제15조 【가설건축물】**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6.2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광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 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하 생략>

166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171 (1) 행정절차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다음과 같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행위와 임의적인 자유변경행위로 구분한다.

분류	시설군	절차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del>단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바다면적 합계 150㎡ 미만), 안마시설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바다면적의 합계 1,000㎡ 미만)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del>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기타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페이지		교정 후													
188	2) 감리권한	<p>2. 상주공사감리</p> <p>① 바닥면적의 합계 5천m<sup>2</sup>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 공사는 제외)</p> <p>② 연속된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m<sup>2</sup> 이상인 건축 공사</p> <p>③ 아파트(20세대 미만) 건축 공사</p>	<p>건축사</p>	<p>·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수행</p> <p>· 토목·전기·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공사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p>	<p>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 제5항</p>										
		<p>3.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p>	<p>·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b>- 건설기술용역업자</b></p> <p>· 건축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b>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시</b>)</p>	<p>· 감리전문회사는 해당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p> <p>·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배치함</p> <p>· 책임감리원의 배치</p> <table border="1"> <thead> <tr> <th>총예정 공사비</th> <th>감리원의 등급</th> <th>감리경력</th> </tr> </thead> <tbody> <tr> <td>500억 이상인 건설공사</td> <td>수석감리사</td> <td>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td> </tr> <tr> <td>3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건설공사</td> <td>수석감리사</td> <td>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td> </tr> <tr> <td>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건설공사</td> <td>감리사</td> <td>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td> </tr> </tbody> </table>	총예정 공사비	감리원의 등급	감리경력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수석감리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건설공사	수석감리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건설공사	감리사
총예정 공사비	감리원의 등급	감리경력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수석감리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건설공사	수석감리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건설공사	감리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197	4) 유지·관리점검자	<p><b>유지·관리점검자</b></p> <p>1.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p> <p><b>2. 건설기술용역업자</b></p> <p>3.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p>	<p><b>관련규정</b></p> <p>「건축사법」 제23조제1항</p> <p><b>「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제1항</b></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p>												
199	1) 건축물의 철거 신고	<table border="1"> <thead> <tr> <th>대 상</th> <td>건축허가 대상건축물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td> </tr> <tr> <th>시 기</th> <td>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b>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td> </tr> <tr> <th>제출서류</th> <td>①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별지 25호 서식) ② 해체공사계획서* ③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산업안전보건법」)</td> </tr> </thead> </table> <p>* 해체공사계획서에 포함될 내용</p> <p>①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p> <p>②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p> <p>③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p>	대 상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시 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b>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별지 25호 서식) ② 해체공사계획서* ③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산업안전보건법」)							
대 상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시 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b>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별지 25호 서식) ② 해체공사계획서* ③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산업안전보건법」)														

페이지		교정 후											
199	2) 건축물의 멸실 신고	<table border="1"> <tr> <td>대 상</td> <td>건축허가 대상건축물</td> </tr> <tr> <td>시 기</td> <td>멸실 후 30일 이내에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td> </tr> <tr> <td>제출서류</td> <td>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별지 25호 서식)</td> </tr> </table>	대 상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시 기	멸실 후 30일 이내에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제출서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별지 25호 서식)					
	대 상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시 기	멸실 후 30일 이내에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제출서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별지 25호 서식)												
	3) 신고필증의 교부 및 건축물대장의 정리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1), 2)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별지 제25호의2 서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200	<b>요점</b> 건축물 대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 기재 및 보관의무자</td> <td><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td> </tr> <tr> <td>2. 목적</td> <td>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td> </tr> <tr> <td>3. 기재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td> <td>           ①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②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이 공사를 끝낸 후 기재요청을 한 경우            ③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35조)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 신청이 있는 경우            ⑥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td> </tr> <tr> <td>4. 서식, 절차 등</td> <td>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1. 기재 및 보관의무자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목적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3. 기재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②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이 공사를 끝낸 후 기재요청을 한 경우 ③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35조)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 신청이 있는 경우 ⑥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서식, 절차 등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구 분	내 용										
1. 기재 및 보관의무자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목적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3. 기재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②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이 공사를 끝낸 후 기재요청을 한 경우 ③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35조)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 신청이 있는 경우 ⑥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서식, 절차 등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205	1)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출구 방향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한용도</th> <th>제한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u>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위락시설         </td> <td>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깥쪽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단이로 해서는 안 된다.</td> </tr> </tbody> </table>	제한용도	제한기준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u>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위락시설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깥쪽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단이로 해서는 안 된다.							
		제한용도	제한기준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u>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위락시설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깥쪽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단이로 해서는 안 된다.												

페이지		교정 후																	
211	②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의 용도</th> <th>해당부분</th> <th>바닥면적 합계</th> </tr> </thead> <tbody> <tr> <td>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유흥주점</td> <td>해당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td> <td rowspan="2">200m<sup>2</sup> 이상</td> </tr> <tr> <td>2.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 300m<sup>2</sup>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에 한함) · 의료시설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td> <td>3층 이상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td> </tr> <tr> <td>3. 지하층</td> <td>해당층의 거실</td> <td>200m<sup>2</sup> 이상</td> </tr> <tr> <td>4.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제외), 오피스텔</td> <td>해당층의 거실</td> <td>300m<sup>2</sup> 이상</td> </tr> <tr> <td>5. 앞의 1, 2, 4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td> <td>3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층의 거실</td> <td>400m<sup>2</sup> 이상</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용도	해당부분	바닥면적 합계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 <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유흥주점	해당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m <sup>2</sup> 이상	2.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 300m <sup>2</sup>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에 한함) · 의료시설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3층 이상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	3. 지하층	해당층의 거실	200m <sup>2</sup> 이상	4.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제외), 오피스텔	해당층의 거실	300m <sup>2</sup> 이상	5. 앞의 1, 2, 4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3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층의 거실	400m <sup>2</sup> 이상
건축물의 용도	해당부분	바닥면적 합계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 <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유흥주점	해당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m <sup>2</sup> 이상																	
2.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 300m <sup>2</sup>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에 한함) · 의료시설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3층 이상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거실																		
3. 지하층	해당층의 거실	200m <sup>2</sup> 이상																	
4.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제외), 오피스텔	해당층의 거실	300m <sup>2</sup> 이상																	
5. 앞의 1, 2, 4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3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층의 거실	400m <sup>2</sup> 이상																	
212	③ 옥외피난 계단의 추가 설치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의 용도</th> <th>설치대상 (당해층의 거실면적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공연장(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 포함)</td> <td rowspan="2">바닥면적 합계가 300m<sup>2</sup> 이상인 공연·무도 등 용도의 층</td> </tr> <tr> <td>2. 유흥주점</td> </tr> <tr> <td>3. 집회장</td> <td>바닥면적 합계가 1,000m<sup>2</sup> 이상인 집회용도의 층</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용도	설치대상 (당해층의 거실면적 기준)	1. 공연장(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m <sup>2</sup> 이상인 공연장 포함)	바닥면적 합계가 300m <sup>2</sup> 이상인 공연·무도 등 용도의 층	2. 유흥주점	3. 집회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m <sup>2</sup> 이상인 집회용도의 층										
건축물의 용도	설치대상 (당해층의 거실면적 기준)																		
1. 공연장(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m <sup>2</sup> 이상인 공연장 포함)	바닥면적 합계가 300m <sup>2</sup> 이상인 공연·무도 등 용도의 층																		
2. 유흥주점																			
3. 집회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m <sup>2</sup> 이상인 집회용도의 층																		
227	2) 옥상광장의 설치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층위치</th> <th>용도</th> </tr> </thead> <tbody> <tr> <td>5층 이상의 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li> <li>· 종교시설</li> <li>· 장례식장</li> <li>· 유흥주점</li> <li>·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용도바닥면적합계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li> <li>· 판매시설</li> </ul> </td> </tr> </tbody> </table>	층위치	용도	5층 이상의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li> <li>· 종교시설</li> <li>· 장례식장</li> <li>· 유흥주점</li> <li>·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용도바닥면적합계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li> <li>· 판매시설</li> </ul>													
층위치	용도																		
5층 이상의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li> <li>· 종교시설</li> <li>· 장례식장</li> <li>· 유흥주점</li> <li>·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용도바닥면적합계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li> <li>· 판매시설</li> </ul>																		



페이지		교정 후																																	
252	2) 배연설비 설치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의 용도</th> <th>규 모</th> <th>설치장소</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li> <li>•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li> <li>•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li> <li>•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li> </ul> </td> <td>6층 이상인 건축물 설치장소</td> <td>거실</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용도	규 모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li> <li>•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li> <li>•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li> <li>•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li> </ul>	6층 이상인 건축물 설치장소	거실																											
건축물의 용도	규 모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m<sup>2</sup>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li> <li>•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li> <li>•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li> <li>•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li> </ul>	6층 이상인 건축물 설치장소	거실																																	
264	예제문제 01	<p><b>예제문제 01</b></p> <p>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p> <p>① 배연설비의 <b>설비기준</b></p> <p>② 오수정화시설의 구조기준</p> <p>③ 급수설비를 통한 급수의 수질기준</p> <p>④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의 성능기준</p> <p>.....</p> <p><b>해설</b> 「건축법」의 건축설비규제 일람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규제조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승용승강기</td> <td>설치대상(법 제64조 ①항)</td> </tr> <tr> <td>설치기준(건축물의 설비 규칙 제5조)</td> </tr> <tr> <td rowspan="2">2. 비상승강기</td> <td>설치대상(법 제64조 ②항)</td> </tr> <tr> <td>설치기준(영 제90조 ①, ②항)</td> </tr> <tr> <td></td> <td>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설비규칙 제10조)</td> </tr> <tr> <td rowspan="2">3. 피난승강기</td> <td>설치대상(피난규칙 제29조)</td> </tr> <tr> <td>설치기준(피난규칙 제30조①항)</td> </tr> <tr> <td>4. 온돌 및 난방설비</td> <td>설치기준(법 제63조, 설비규칙 제4조)</td> </tr> <tr> <td>5. 난방설비</td> <td>개별난방설비기준(설비규칙 제13조)</td> </tr> <tr> <td>6. 배연설비</td> <td>배연설비대상 및 설비기준</td> </tr> <tr> <td>7. 환기설비</td> <td>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설비규칙 제11조)</td> </tr> <tr> <td>8. 배관설비</td> <td>급수, 배수, 음용수용 배관 설비기준</td> </tr> <tr> <td>9. 피뢰설비</td> <td>피뢰설비 대상 및 설비기준</td> </tr> <tr> <td>10. 굴뚝</td> <td>굴뚝의 설치기준(피난규칙 제20조)</td> </tr> <tr> <td>11. 차수설비</td> <td>차수설비 대상 등(설비규칙 제17조의2)</td> </tr> <tr> <td>12. 냉방설비</td> <td>배기구 설치 제한(설비규칙 제23조 ③항)</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답 : ①</p>			구분	규제조항	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법 제64조 ①항)	설치기준(건축물의 설비 규칙 제5조)	2. 비상승강기	설치대상(법 제64조 ②항)	설치기준(영 제90조 ①, ②항)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설비규칙 제10조)	3. 피난승강기	설치대상(피난규칙 제29조)	설치기준(피난규칙 제30조①항)	4.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법 제63조, 설비규칙 제4조)	5. 난방설비	개별난방설비기준(설비규칙 제13조)	6. 배연설비	배연설비대상 및 설비기준	7. 환기설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설비규칙 제11조)	8. 배관설비	급수, 배수, 음용수용 배관 설비기준	9. 피뢰설비	피뢰설비 대상 및 설비기준	10. 굴뚝	굴뚝의 설치기준(피난규칙 제20조)	11. 차수설비	차수설비 대상 등(설비규칙 제17조의2)	12. 냉방설비	배기구 설치 제한(설비규칙 제23조 ③항)
구분	규제조항																																		
1. 승용승강기	설치대상(법 제64조 ①항)																																		
	설치기준(건축물의 설비 규칙 제5조)																																		
2. 비상승강기	설치대상(법 제64조 ②항)																																		
	설치기준(영 제90조 ①, ②항)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설비규칙 제10조)																																		
3. 피난승강기	설치대상(피난규칙 제29조)																																		
	설치기준(피난규칙 제30조①항)																																		
4.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법 제63조, 설비규칙 제4조)																																		
5. 난방설비	개별난방설비기준(설비규칙 제13조)																																		
6. 배연설비	배연설비대상 및 설비기준																																		
7. 환기설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설비규칙 제11조)																																		
8. 배관설비	급수, 배수, 음용수용 배관 설비기준																																		
9. 피뢰설비	피뢰설비 대상 및 설비기준																																		
10. 굴뚝	굴뚝의 설치기준(피난규칙 제20조)																																		
11. 차수설비	차수설비 대상 등(설비규칙 제17조의2)																																		
12. 냉방설비	배기구 설치 제한(설비규칙 제23조 ③항)																																		
301		(2) 건축설비관련기술사의 협력																																	
304	1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p><b>법 제64조의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b></p> <p><del>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0]</del></p>		삭제																															

페이지		개정 후
356	(1) 효율관리 기자재의 지정	<p><b>법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b></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li> <li>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li> <li>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li> <li>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li> <li>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li> <li>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362	2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p><b>법 제17조2 【과징금 부과】</b></p> <p>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7.30.]</p> <p><b>영 제28조의2 【매출액 기준】</b></p> <p>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p> <p><b>영 제28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b></p> <p>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연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통지받은 해 9월 30일까지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5.]</p>

페이지		교정 후																							
363	(2) 개선명령 밑으로 추가	<p><b>(3) 과징금 부과</b></p> <table border="1"> <tr> <td>1. 부과대상</td> <td>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td> </tr> <tr> <td>2. 부과권자</td> <td>환경부장관</td> </tr> <tr> <td>3. 부과금액</td> <td>해당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의 1/100 이내의 범위</td> </tr> <tr> <td>4. 납부기한</td> <td>통지 받은 해 9월 30일까지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td> </tr> <tr> <td>5. 세부기준</td> <td>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td> </tr> </table>	1. 부과대상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	2. 부과권자	환경부장관	3. 부과금액	해당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의 1/100 이내의 범위	4. 납부기한	통지 받은 해 9월 30일까지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5. 세부기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1. 부과대상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																								
2. 부과권자	환경부장관																								
3. 부과금액	해당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의 1/100 이내의 범위																								
4. 납부기한	통지 받은 해 9월 30일까지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																								
5. 세부기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365	2)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 (규칙 별표2 참고)	<table border="1"> <tr><td>1. 컴퓨터</td></tr> <tr><td>2. 모니터</td></tr> <tr><td>3. 프린터</td></tr> <tr><td>4. 복합기</td></tr> <tr><td>5. 셋톱박스</td></tr> <tr><td>6. 전자레인지</td></tr> <tr><td>7. 팩시밀리</td></tr> <tr><td>8. 복사기</td></tr> <tr><td>9. 스캐너</td></tr> <tr><td><del>10. 바타오태어프레코타</del>     삭제</td></tr> <tr><td>11. 오디오</td></tr> <tr><td>12. DVD플레이어</td></tr> <tr><td>13. 라디오카세트</td></tr> <tr><td>14. 도어폰</td></tr> <tr><td>15. 유무선전화기</td></tr> <tr><td>16. 비데</td></tr> <tr><td>17. 모뎀</td></tr> <tr><td>18. 홈게이트웨이</td></tr> <tr><td>19. 자동절전제어장치</td></tr> <tr><td>20. 손건조기</td></tr> <tr><td>21. 서버</td></tr> <tr><td>22. 디지털컨버터</td></tr> <tr><td>2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td></tr> </table>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복합기	5. 셋톱박스	6. 전자레인지	7. 팩시밀리	8. 복사기	9. 스캐너	<del>10. 바타오태어프레코타</del> 삭제	11. 오디오	12. DVD플레이어	13. 라디오카세트	14. 도어폰	15. 유무선전화기	16. 비데	17. 모뎀	18. 홈게이트웨이	19. 자동절전제어장치	20. 손건조기	21. 서버	22. 디지털컨버터	2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복합기																									
5. 셋톱박스																									
6. 전자레인지																									
7. 팩시밀리																									
8. 복사기																									
9. 스캐너																									
<del>10. 바타오태어프레코타</del> 삭제																									
11. 오디오																									
12. DVD플레이어																									
13. 라디오카세트																									
14. 도어폰																									
15. 유무선전화기																									
16. 비데																									
17. 모뎀																									
18. 홈게이트웨이																									
19. 자동절전제어장치																									
20. 손건조기																									
21. 서버																									
22. 디지털컨버터																									
2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페이지		교정 후
368	② 대기전력 경고표지대상 제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컴퓨터</li> <li>2. 모니터</li> <li>3. 프린터</li> <li>4. 복합기</li> <li>5. <del>셋톱박스</del> 삭제</li> <li>6. 전자레인지</li> <li>7. 팩시밀리</li> <li>8. 복사기</li> <li>9. 스캐너</li> <li>10. <del>바타오태어프레코더</del> 삭제</li> <li>11. 오디오</li> <li>12. DVD플레이어</li> <li>13. 라디오카세트</li> <li>14. 도어폰</li> </ol>
372		<p><b>법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b></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li> <li>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li> <li>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li> <li>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li> <li>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p> <p>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372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규 제20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규 제2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391

(2) 에너지사용량 신고

신고내용	신고기한	절차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신고 시·도지사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실적 및 해당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에너지관리자현황		

페이지		교정 후				
391	5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p><b>▣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b></p> <p>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제품생산량</li> <li>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li> <li>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li> <li>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li> </ol> <p>② 시·도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li> <li>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li> <li>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li> <li>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li> </ol> <p><b>▣ 영 제35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b></p> <p>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톤 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p>				
396	3) 에너지진단의 면제, 연장	<table border="1"> <tr> <td style="vertical-align: top;">1. 대상</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li> <li>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에너지절약유공자</li> <li>③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li> <li>④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li> <li>나.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li> <li>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li> <li>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li> <li>마.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li> </ol> </li> <li>⑤ 에너지의 공급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제어 시스템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li> </ol>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2. 신청서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청서</li> <li>②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③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④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li> <li>⑤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⑥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⑦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td> </tr> </table>	1.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li> <li>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에너지절약유공자</li> <li>③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li> <li>④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li> <li>나.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li> <li>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li> <li>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li> <li>마.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li> </ol> </li> <li>⑤ 에너지의 공급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제어 시스템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li> </ol>	2. 신청서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청서</li> <li>②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③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④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li> <li>⑤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⑥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⑦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1.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li> <li>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에너지절약유공자</li> <li>③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li> <li>④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기자재 및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설비</li> <li>나.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li> <li>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li> <li>라. 인증 표시를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li> <li>마.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li> </ol> </li> <li>⑤ 에너지의 공급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제어 시스템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li> </ol>					
2. 신청서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청서</li> <li>②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③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④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li> <li>⑤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한 에너지절약 투자 및 개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⑥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⑦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페이지		교정 후											
402	4) 지정취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사유</th> <th>조치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td> <td>· 지정취소 강행</td> </tr> <tr> <td>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td> <td rowspan="4">· 지정취소 · 2년 이내 업무정지 입의</td> </tr> <tr> <td>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td> </tr> <tr> <td>4.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td> </tr> <tr> <td>5.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td> </tr> <tr> <td colspan="2">6. <u>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u></td> </tr> </tbody> </table>	위반사유	조치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강행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 지정취소 · 2년 이내 업무정지 입의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u>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u>	
위반사유	조치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강행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 지정취소 · 2년 이내 업무정지 입의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u>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u>													
412	예제문제 36번 뒤쪽 내용 추가	<p><b>9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효율관리</b></p> <p><b>법 제35조의2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b></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업자(「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불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li> <li>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li> <li>3. 그 밖에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30.]</p> <p><b>규 제31조의30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b></p> <p>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냉장고</li> <li>2. 전기세탁기</li> <li>3. 식기세척기</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건설업자가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종류 또는 규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1.]</p>											

페이지		교정 후					
412	예제문제 36번 뒤쪽 내용 추가	<p><b>요점</b> <b>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효율관리</b></p> <p><b>(1) 효율관리대상</b></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건설업자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불박이 가전제품</td> <td>1. 전기냉장고</td> <td rowspan="3">건축물의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함</td> </tr> <tr> <td>2. 전기세탁기</td> </tr> <tr> <td>3. 식기세척기</td> </tr> </table> <p><b>(2) 효율기준사항</b></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음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li> <li>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li> <li>그 밖에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불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p>	건설업자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불박이 가전제품	1. 전기냉장고	건축물의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함	2. 전기세탁기	3. 식기세척기
건설업자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불박이 가전제품	1. 전기냉장고	건축물의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함					
	2. 전기세탁기						
	3. 식기세척기						
446	(1) 공단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li> <li>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li> <li>에너지이용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li> <li>다음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li> <li>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li> <li>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li> <li>라.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li> </ul> </li> <li>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li> <li>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li> <li>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li> <li>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li> <li>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li> <li>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li> <li>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li> <li>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li> </ol>					

페이지		교정 후
461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p><u>1. 제32조제2항에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u></p> <p><u>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u></p>
466	(1) 용어의 정의	<p>③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1호 및 제 2호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p>
530	예제문제 09	<p><b>예제문제 09</b></p> <p>「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상의 용어정의로 적합한 것은? 【13년 2급 출제유형】</p> <p>① 주거용 건축물이란 단독주택과 <b>공동주택</b>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②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이외의 건축물로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③ 사용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면적을 포함한다.</p> <p>④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b>소용량</b>이란 에너지 사용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과정들의 손실을 <b>제외한</b> 사용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p> <hr/> <p><b>해설</b> 1.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사용면적이란 해당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면적을 제외한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b>답 : ①</b></p>
646	4번 해설	<p><b>해설</b>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해당된다.</p>